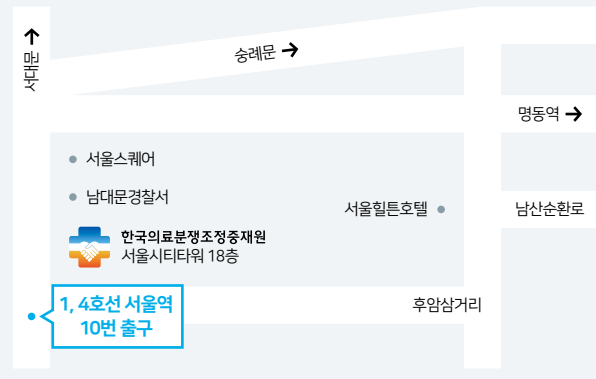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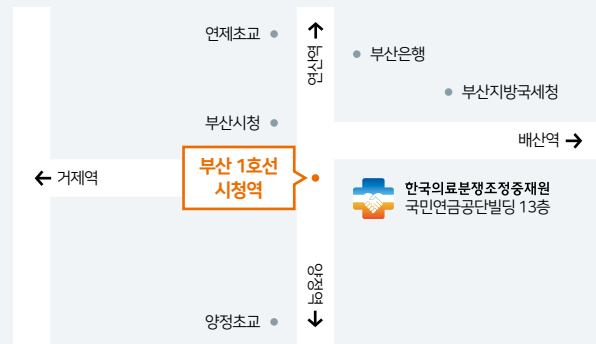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상담인력과 조사관(의료인), 심사관(법조인)이 있어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안내(서울 본원)



위치 안내(부산 지원)



-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6시)
- 방문상담을 하기 전 전화문의 하시면 좀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타워 18층(상담센터)
Tel. 1670-2545 Fax. 02-6210-0199 www.k-medi.or.kr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부산화관빌딩 13층 (연산동)
Tel. 051-910-7300~1 Fax. 051-910-7399 www.k-medi.or.kr

설명의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주세요!

의료인의 경우



- 1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 2 설명은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3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장애 및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후,
환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주세요!

환자의 경우



- 1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이 치료가 꼭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 2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위험한 치료인지 물어보세요.
- 3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을 요청하세요.
- 4 의료행위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세요.

설명을 들은 후,
치료여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해주세요!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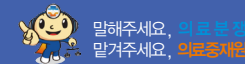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말해주세요, 의료분쟁
말겨주세요, 의료중재원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요?



설명의무는 특히 어떤 경우 꼭 해야 하나요?



설명의무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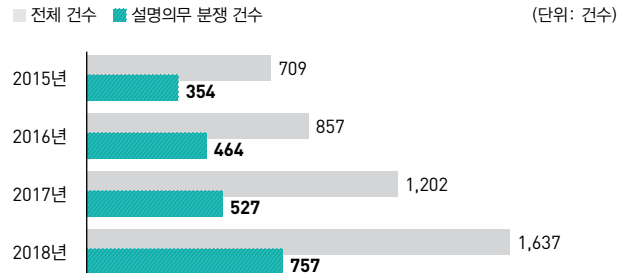
설명의무란?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의료행위의 방법, 합병증과 부작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질병에 대한 진단 결과,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자기결정권이란?

환자가 진료시 어떠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을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설명의무 의료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그중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수술과 같이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
- 사망이나 장애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 그 외 환자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설명의무는 언제 시행해야 하나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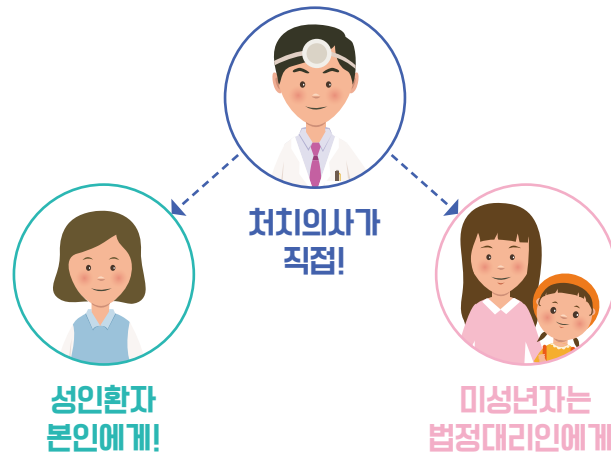
주체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처치의사가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치의나 다른 동료의사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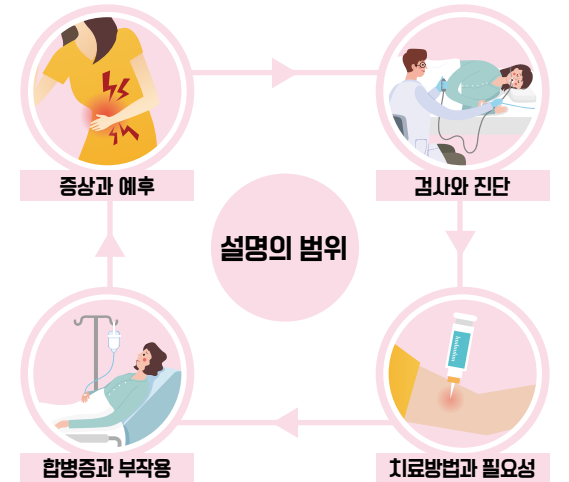
상대방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는 본인에게,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합니다.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쟁점의 적절성 판단 결과, 27.7%가 '부적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